

<p>제2019-234호 2019년 12월 13일(금)</p>	<p><b>시 보</b></p>  <p>여수시</p>	<p><b>시 정 지 표</b></p> <p>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</p>
--	--	--

■ 발행인 : 여수시장 ■ 발행소 : 공보담당관실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5 FAX) 659-5803

**고 시**

○ 여수시 고시 제2019- 383호 소규모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3

**공 고**

○ 여수시 공고 제2019-3003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사항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4  
 ○ 여수시 공고 제2019-3009호 전기사업 양수인가공고 5  
 ○ 여수시 공고 제2019-3012호 도로 지정 공고(주삼동 163-1) 6  
 ○ 여수시 공고 제2019-3015호 「여수시 지명위원회 조례」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  
 ○ 여수시 공고 제2019-3020호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 15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

여수시 고시 제2019 - 383호

## 소규모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3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

변경승인번호	매립면허취득자		매립목적	면적 (㎡)	변경사유	공사기간	면허장소	매립예정지 토지이용계획
	주소	성명						
2019-6 (2019. 12.13.)	여수시 시청로 1	여수시장 (섬자원 개발과장)	남면 심포지구 시설 정비공사	632	차량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단절된 구간 에 대해 사고예방 및 차량소통을 위해 매 립구간조정 및 점용·사용부(사석부) 경사도 조정(1:1→1:0.7)	2019. 8. 5. ~ 2020. 8. 4.	여수시 남면 심장리 874-38번지 일원 공유수면	도로
				- 당초:도로확장 L=114.3m, 면적 A=632㎡(매립 391, 점용·사용 241)				
				- 변경(1차):도로확장 L=118.3m, 면적 A=632㎡(매립 475, 점용·사용 157)				
				- 변경(2차):도로확장 L=118.3m, 면적 A=632㎡(매립 525, 점용·사용 107)	도로 확장구간중 일부 구간의 지반고 상으로 인한 조정 및 선박접안 등 주민 이용 편리성을 위하여 점사용부(사석부) 경사도 조정(1:0.7→1:0.5)			

2019. 12. 13.

여 수 시 장

#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사항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0조(건설업의 등록기준) 의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(건설업의 등록말소 등)3의2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이 사감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.

2019년 12월 13일

## 여 수 시 장

### 1. 행정처분 대상 업체

상 호 (대표자)	해당업종	처분내용	처분사유	처분근거
능원기업(주) (이 * 호)	철근·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토공사업	등록말소 (2019.12.10.)	건설업 등록기준 미달(자본금,기술인력,보증가능금액)	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2호

2. 공고송달기간 : 2019. 12. 13. ~ 2019. 12. 27(15일)

3. 공고 장소 : 전국 시 · 군 ·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

4. 기 타

가. 본 행정처분사항은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5조의3(등록말소 등의 공고)에 의하여 건설산업종합정보망([www.kiscon.net](http://www.kiscon.net))에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 및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또한,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, 온라인 행정심판([www.simpan.go.kr](http://www.simpan.go.kr))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, 재결서 열람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다. 처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청 도시계획과(☎061-659-4005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

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(태양광발전)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,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. 12. 13.

## 여 수 시 장

○ 양수인가 내용

구 분	허가번호	발전소명 [대표자]	설치장소	설치용량 (kW)
양도인	여수 제401호	다니엘1호 태양광발전소 [최채환]	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산165번지	299.16
양수인		박지수3호 태양광발전소 [박지수]		

## 도로 지정 공고

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163-1번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·공고합니다.

### 1. 도로 지정 공고 내역

도 로 위 치		도로길이 (m)	도로너비 (m)	도로면적 (m <sup>2</sup> )	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	비고
계		10.5m	2m	21m <sup>2</sup>	도로대장 참조 (허가민원과 비치)	
여수시 주삼동	163-1	10.5m	2m	21m <sup>2</sup>	"	

2. 관련도서 : 생략(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)

### 3. 기타사항

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(061-659-411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9. 11. 13.

여 수 시 장

## 공 고

「여수시 지명위원회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)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년 12월 13일

## 여 수 시 장

### 「여수시 지명위원회 조례」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 취지

- 조례상 근거 법령인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이 폐지되고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
-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을 당연직 “업무담당 국장”으로 구성
- 조문을 법제처의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과 한글맞춤법 및 형식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조례상 인용된 상위 법률 제명 변경(안 제1조)
  - 제1조 중 “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91조”를 “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1조”로, “지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“라 한다)의”를 “지명위원회의”로, “운영등”을 “운영 등”으로 한다.
- 여수시 지명위원회 위원(부위원장) 구성 변경(안 제2조) 등
  - 제2조2항 중 “위원중에서 호선한다”를 “업무담당 국장이 된다“로 한다.
- 제5조3항 삭제, 제9조(시행규칙)을 (운영세칙)으로 변경 등
  - ※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3. 입법예고기간 : 2019. 12. 13. ~ 2020. 1. 2.(21일간)

## 4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0년 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(참조: 도시계획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가. 의견제출 사항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의견 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), 연락처
- 기타 의견

### 나. 의견제출 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팩스(번호 061-659-5833)

### 다. 기타 참고사항

- 우편주소 : 여수시 시청로 1(학동, 여수시청 도시계획과) (59675)
- 업무담당자 : 도시계획과 김형출(ch2021@korea.kr)
- 문의전화 : 061-659-4005

붙임 여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. 끝.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 : 「여수시 지명위원회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

## 여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여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여수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① 여수시 지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관계 공무원

2. 지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3명 이상

3.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라남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,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
**제3조(임기)**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**제4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지명의 제정·변경 또는 조정

2.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

3.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

**제5조(지명의 조사)**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, 인공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,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(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V 오류를 포함한다)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.

③ <삭제>

**제6조(의견청취)**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·의결할 때에는 조서를 작성 했거나 \_\_이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.

**제7조(수당)**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8조(회의록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1. 회의 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
3. 토의사항 및 진행 상황
4.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
5. 그 밖의 중요한 사항

**제9조(운영세칙)**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「<u>측량·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</u>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여수시 <u>지명위원회</u>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과 기능 및 <u>운영</u>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b>제2조(구성)</b> ① <u>위원회</u>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<u>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<u>도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시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</u>할 수 있다.</p> <p>⑤ <u>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, 소속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</u></p> <p><b>제4조(기능)</b>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<u>심의 결정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지명의 <u>제정 변경</u> 또는 조정</li> <li>2. <u>관할구역내</u>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</li> </ol>	<p><b>제1조(목적)</b> ----- 「<u>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</u>」 제91조 ----- ----- ---- <u>지명위원회</u>----- ----- <u>운영 등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<b>제2조(구성)</b> ① <u>여수시 지명위원회</u>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----- -----.</p> <p>② <u>위원장은 여수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 <u>전라남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</u>----- <u>겸임</u> <u>하게 할</u> -----.</p> <p>⑤ ----- <u>소속 공무원 중</u>-----.</p> <p><b>제4조(기능)</b> ----- ----- <u>심의 · 의결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---- <u>제정 · 변경</u> -----</li> <li>2. <u>관할구역 내</u>----- -----</li> </ol>

3. (생략)

제5조(지명의 조사)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 (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)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지 오류지명을 조사한다.

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 기관 소속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,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는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.

제6조(의견청취)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사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읍·면·동의 소속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.

제7조(수당) 위원회에 출석하는 해

3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지명의 조사) ① -----  
----- 관할구역 내-----  
---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, 인공지명 등 -----  
-----.

② -----  
----- 유래, -----  
----- 지명 중 -----  
-----  
----- 지명 오류-----  
-----  
표기 오류 지명-----.

<삭 제>

제6조(의견청취)-----지명을  
심의·의결할 때에는 조서를  
작성했거나 ----- 관계  
공무원 또는 -----  
의견을 청취하는 등 -----  
-----.

제7조(수당) ----- 시

당 기관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.

**제8조(회의록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**제9조(시행규칙)**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소속 공무원-----  
-----  
-----  
-----에 따라-----  
-----지급할-----.

**제8조(회의록)** -----  
----- 작성·비치 -----  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**제9조(운영세칙)** 이 조례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

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라 신고사항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0조의2 (건설업의 폐업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(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)에 따라 폐업 처리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2월 13일

## 여 수 시 장

### 1. 폐업대상 업체

상 호	영업 소재지	폐업대상 건설업종 (등록번호)	법인번호	폐업일자	폐업사유
청신인더스트리 (김*용)	여수시 시전3길 16(신기동)	난방시공업 제1종 (여수98-01-01)	600930-1*****	2019. 12.13.	사업포기

2. 공고 기간: 2019. 12. 13.~2019. 12. 27.(15일)

3. 공고 장소: 여수시 홈페이지 및 시보

4. 기타

본 신고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(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)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시스템(<http://www.kiscon.net>)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